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09766 판결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박소희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7.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25. 선고 2022가소7107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2022.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1)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와 같이 선택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파주시 D 답 4,611㎡와 E 답 3,94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성토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흙은 질이 좋지 않았고 그 높이도 너무 높아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다. 원상복구에 관한 논의 끝에, 원고,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등은 2020. 2.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상복구 확약서

지번: D, E 두 필지

위 토지에 성토한 토사를 원상복구 함에 있어서 원고, 피고 B, C(둘째 딸) 두 사람의 협의 하에 2020. 3. 31.까지 성토 이전 원래의 논으로 원상회복시키기로 서로 간에 협의한다.

원고는 원상복구의 일부 비용 2,000만 원을 (공란)에게 지불하고 그 이외의 모든 원상복구에 쓰이는 부대비용은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후 땅 주인과의 모든 문제들도 피

고들이 책임진다.

원고

피고 B (계좌번호 1 생략)(농협)

피고 C

원상복구 총 책임자(공사실행책임) F

참고인 G

라.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확약서를 두 부 작성하여 나누어 가졌는데, 원고는 F의 요구로 피고 C가 보관하는 이 사건 확약서 뒷면에 ‘원상복구 중 고의적인 폐기물이 발생했을 시에는 폐기물 처리는 본인(원고)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기재하여 주었다.마. 원고는 2020. 2. 20. 피고 B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20. 2. 21. F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바. F은 2020. 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흙에 원고가 말한 것 이상의 폐기물이 있다면서 그 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F에게 폐기물은 치워두면 자신이 처리할 테니 나머지는 협의한대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F은 원고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성토된 흙을 반출하는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1)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 체계, 체결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으로 당초 진행한 성토공사의 토질, 단차 문제로 인해 해당 성토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원고는 그 원상복구비 중 20,000,000원만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공사업자 F을 통해 원상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며, 원고가 부담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부대비용 등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성토된 흙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어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목적인 성토 부분 원상복구는 모두 달성되어 결국 이 사건 확약서는 실효 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상복구비 2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F에게 원상복구 공사를 위임하였고, 형식상 피고 B의 계좌를 거쳤을 뿐, 당사자들이 원상복구 공사비 20,000,000원을 F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게 공사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이익을 받은 바 없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는 원상복구비 중 일부인 20,000,000원의 비용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진행, 비용 부담 등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B의 농협 계좌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F은 원래 피고 C와 친분이 있었던 공사업자로, 이 사건 확약서에 ‘원상복구총책임자(공사실행책임)’로서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의 원상복구비 일부 부담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F에 대해 원고가 공사를 위임한다거나 도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F이 원고와 피고들 모두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자로서 원고로부터 원상복구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피고 C는 고령인 피고 B를 위해 이 사건 확약서 체결에 참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전달받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채무이행을 위한 급부 자체가 이득을 구성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가 목적 달성으로 실효 내지 종료된 이상 이 사건 확약서의 당사자인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원고가 기지급한 원상복구비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25.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2.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원상복구비를 지급한 다음날인 2020. 2. 21.경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상복구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의 결론 중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으로 변경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변경할 뿐이므로,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이민영, 판사 옥제영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연대하여’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바, 위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